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5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8조의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u>

	<u>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병원 지정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개의 평가¹⁾가 수행되고 있음.

□ 의료기관은 각 평가기관에 평가 내용을 개별 보고하고 있고, 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자료 제출방법도 상이하며²⁾, 평가 결과의 관리 및 공개 등이 각 평가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1) 참고자료1 참조.

2) 참고자료3 참조.

의료기관은 중복적인 평가로 인해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은 의료 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의료 질에 관한 평가 중 일부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병원평가통합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인증평가,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등은 평가 결과를 각 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는 등 평가 결과의 공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³⁾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3월부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병원평가통합포털’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포털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평가 등 6개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포털에서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수행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시된 바 있음.⁵⁾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 질 평가제도를 통합·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3) p.13 참고자료2 참조.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공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보건의료의 분야별 우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021년도 총 사업비 4,303백만원 규모, p.17 참고자료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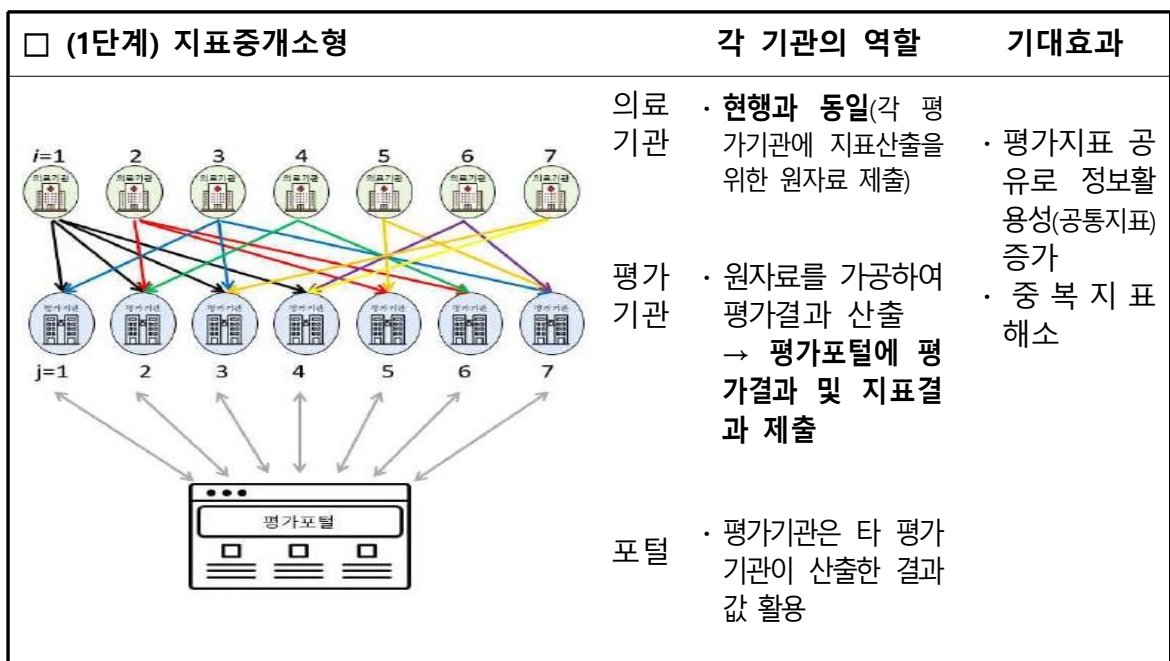
5)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병원평가통합포털의 개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했지만, 개별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평가 결과를 수집·공개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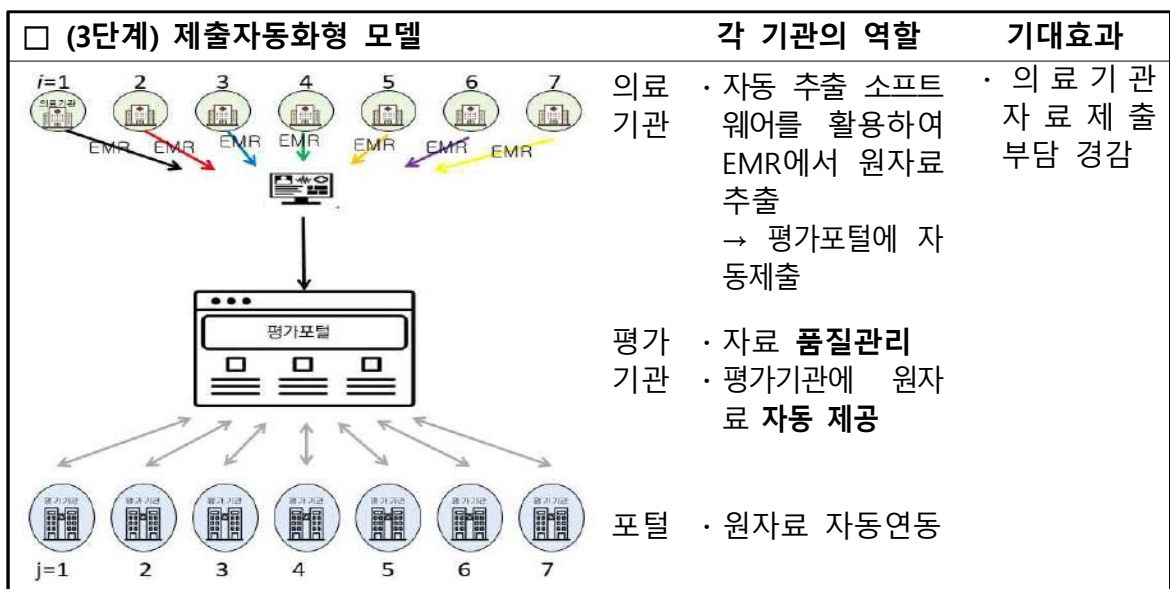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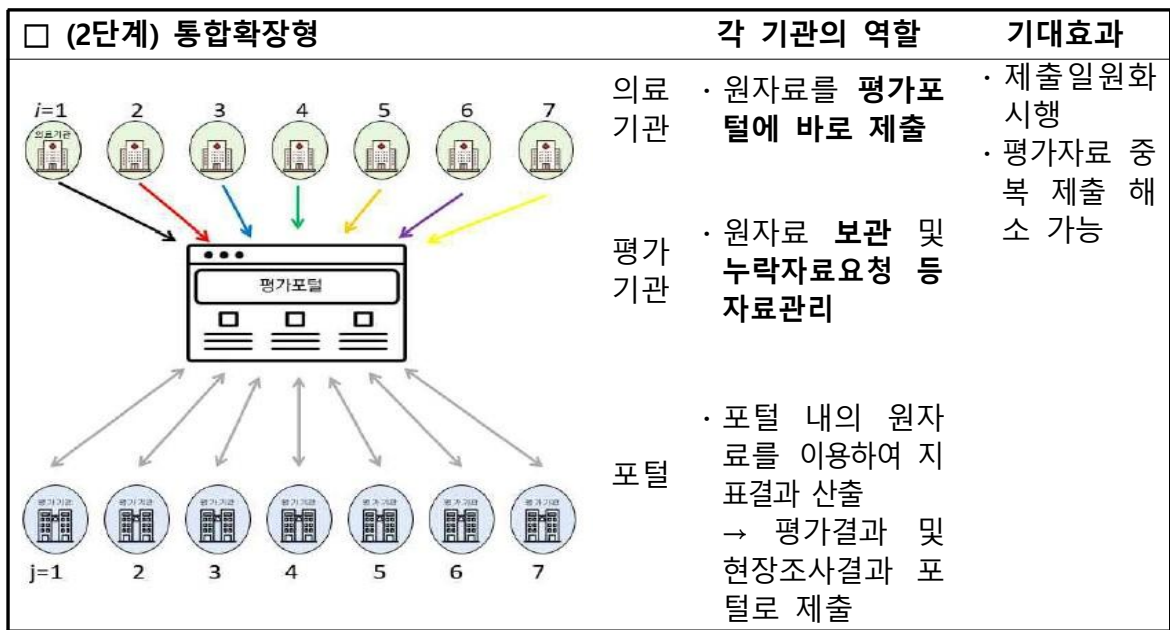
□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평가정보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평가지표의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기관들의 평가 효율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행 의료기관에서 각 평가기관에 평가자료를 개별 제출하는 방식에서 향후 EMR⁶⁾을 연계하여 평가자료를 자동추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자료의 효율적 수집, 평가정보 통합관리, 평가 결과 정보 제공 창구의 일원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평가통합포털 구축 방향 모델 >



6)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기존의 종이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 관리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의료정보를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지칭함.



출처: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가 수행기관⁷⁾이 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 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등

-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⁸⁾

□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각 평가의 목적 및 시기가 상이하므로, 평가 결과를 통합·연계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의무¹⁰⁾를 부여하는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제2203553호)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개별법에 마련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정수용)

□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

8) 「의료법」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9)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 결과의 공개가 각 의료기관의 순위매기기로 이어져, 의료기관이 실질적인 국민 보건 향상이 아니라 평가점수에만 몰두하여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됨.

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의료기관은 평가정보 보고체계 일원화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을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을 통한 환자 선택권 강화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명칭을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평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자료요청 대상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평가 수행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실효적인 평가 지표 표준화가 미비하고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그 신뢰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체계는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중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역의료 붕괴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궁극적인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병원별 진료환경이 상이한 만큼, 의료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체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3) 대한병원협회(조건부 찬성)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평가정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공개할 경우 의료기관 서열화 및 지역 간, 종별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져 환자 및 의료인력 등 자원의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 있음.
- 따라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공개 대상 평가의 선정 및 공개 범위, 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결정하여 평가정보 공개 및 연계 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법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있고 일부는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자료1: 의료기관 대상 평가 현황]

(‘24.1월)

평가제도		주요내용	평가기관	근거법령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주요내용) 의료서비스가 안전성·환자중심성· 효과성·효율성 등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도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2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 병 원 ·(주요내용)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향상하여 국민에 대한 의약학적 보호 강화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 (선택진료 비 단계적 축소·폐지 계기로 평가 도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3	전문병원 지정평가	·(평가대상)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주요내용)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 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요건 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4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평가대상) 종합병원 ·(주요내용)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 요건 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평가대상) 병원 ·(주요내용)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위 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 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 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제10 조 ~ 제13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6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평가대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내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을 위한 지정 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1조의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 한 기준」(고시)
7	의료기관 인증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주요내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자율신청에 따라 인증평가(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의무)	의료기관 평가인증 원	·「의료법」 제58조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
8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내용) 호스피스의 의료 질 향상 및 양질 의 서비스 제공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 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 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
9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내용)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의 적절 성 평가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 조~제12조
10	응급의료기관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주요내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 국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1	지역거점	·(평가대상) 종합병원, 병원 ·(주요내용)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국립중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제21조

	공공병원 운영평가	적십자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 를 제공하며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 는지,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 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 평가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센터		
12	수련환경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주요내용) 전공의 교육 내실화 및 수련교 육환경개선을 위해 병원 진료수준이나 경 영, 시설 전반을 평가	대한병원 협회 수련환경 평가본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전공의법 시행규칙」 제7조	
13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평가대상) 연구중심병원(상종 9개, 종합 1개) ·(주요내용) 연구 시설, 조직, 인력 등 연구 역량 및 논문, 특허, 기술이전, 임상시험 등 연구 실적 평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평가대상) 요양병원(공립) ·(주요내용)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및 공공병원으로서 의 기능 수행 평가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치매 센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15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내용)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 바지하고자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요건 및 결과 평가	서울대학교 병원 중앙심뇌 혈관질환 센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6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내용) 고위험 임신·분만 인프라 구축 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 가 개발, 의료인력 및 시설 표준 정립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17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주요내용)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 하여 권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 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 접근성을 제고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18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 평가	·(평가대상) 병원, 의원, 보건기관 ·(주요내용)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 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 여 보건기관,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연계 지 원 체계의 구축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19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평가대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내용)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 조 및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	
20	의료 취약 지 지원 사업 평가	소아 청소년 과	·(평가대상) 병원 ·(주요내용) 필수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 과가 제공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	국립중앙의 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 조 및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 및 제9조
		인공 신장실	·(평가대상) 병원 ·(주요내용)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의 혈 액투석 환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서 비스 공급을 보장	국립중앙의 료원 중앙모자 의료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 조 및 제13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2. 의료기관 대상 평가 결과 공개 현황]

평가제도		인증·지정결과	평가 결과	지표결과	공개방법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	○ (평가등급)	○ (지표값)	병원평가 통합포털
2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	× (평가기관에만 서면(등기), E-평가시스템 으로 제공)	× (평가기관에만 서면(등기), E-평가시스템 으로 제공)	수행기관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평가영역·지표별 최소·최대·평균 현황 등만 공개)
3	전문병원 지정평가	○ (지정여부 및 분야)	×	×	복지부 홈페이지, 수행기관 홈페이지
4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지정여부)	× (평가기관에만 제공)	× (항목별 점수를 평가기관에만 제공)	복지부 홈페이지, 병원평가 통합포털
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 (지정여부)	×	×	복지부 홈페이지, 병원평가 통합포털
6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 (지정여부)	○ (평가등급)	○ (지표값)	수행기관 홈페이지, 병원평가 통합포털
7	의료기관 인증평가	○ (의료기관-인증등급)	○ (합격여부)	○ (일부 항목 결과)	수행기관 홈페이지
8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	○ (평가등급)	×	수행기관 홈페이지
9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	○ (평가등급)	×	수행기관 홈페이지
10	응급의료기관 평가	-	○ (평가등급)	○ (지표별 등급) * 일부 지표 등급만 외부 공개	종합등급 응급의료포털
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	○ (평가등급)	×	복지부 홈페이지, 병원평가 통합포털

평가제도			인증·지정결과	평가 결과	지표결과	공개방법
12	수련환경평가		○ (지정 여부)	○ (일부만 공개)	×	복지부 홈페이지, 수행기관 홈페이지
13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 인증제 전환 예정 (‘24.7.17)		○ (지정 여부)	×	○ (연구실적)	공문시행
1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	× (평가기관에만 제공)	○ (항목별 결과)	수행기관 홈페이지
15	심뇌혈관질환센 터 지정평가		○ (지정 여부)	× (평가기관에만 통보)	×	복지부 홈페이지
16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평가*		-	×	×	-
17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		-	×	×	-
18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 평가*		-	×	×	-
19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	×	×	-
20	의료취 약지 지원사 업평가*	소아청 소년과	-	×	×	-
		인공신 장실				

주: 16~20번의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평가로 지침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분
만건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지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거나
등급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3. 의료기관 평가제도 보고체계(자료제출) 현황]

연번	평가제도	수행기관	자료원	제출방법(수집방법)	자료제출 시스템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36개 항목)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청구 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 고포털
			행안부 사망자료	자동연계	-
			조사표	전산입력	E-평가시스템, e-Form시스템
			설문지	설문조사(용역)	-
2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청구 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 고포털
			기관제출자료(진료협력체 계 운영, 연구비지출내역, POA 보고체계 운영 등)	전산입력 또는 서면제출	E-평가 시스템
3	전문병원 지정평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청구 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 고포털
			의무기록	서면조사, 현지조사	-
			조사표	전산입력	E-평가시스템
4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청구 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 고포털
			조사표	전산입력	E-평가시스템
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청구 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 고포털
			조사표	전산입력	E-평가시스템
6	난임시술의료 기관평가	심평원	조사표	EMR 연계 및 전산입력	E-평가시스템, e-Form시스템
7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원	조사표	전산입력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 템
8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평가	암센터	조사표	서면조사, 전산입력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9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건보	조사표	서면조사, 전산입력	건강관리포털시스템
10	응급의료 기관평가	NMC	의무기록	서면조사, 전산입력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시스템 통합응급의료정보인프라넷
			조사표		
			기관현황자료		
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NMC	심평원.건보데이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없음
			보건의료자원신고현황 (인력.시설.장비 등)		
			조사표, 설문지		
12	수련환경평가	병협	조사표	서면조사, 현지조사, 전산입력	수련환경평가 통합전산시스템

연번	평가제도		수행기관	자료원	제출방법(수집방법)	자료제출 시스템
13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보산진	조사표	서면조사, 구두평가	없음
1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NMC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및 건강보험 데이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없음
				조사표		
				설문지		
15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서울대	기관현황자료	서면조사, 현지조사, 전산입력	없음
16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평가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서면자료(실적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17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서면자료(실적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18	고위험 산모 연계 지원사업 평가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서면자료(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19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현지조사표	현지조사	
				서면자료(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20	의료취약지 지원사업평가	소아청소년과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현지조사표	현지조사	
				서면자료(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인공신장실	NMC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데이터 구축	없음
				현지조사표	현지조사	
				서면자료(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사업수행기관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4. 병원평가통합포털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민의료 평가포털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 질 관리 및 평가 중요성 증대
- 평가주체 및 목적, 방법 등이 다양한 국내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의료 평가포털' 구축 추진

○ 추진기간 : '21. 11. 10. ~ '22. 12. 29. (414일간)

○ 총사업비 : 4,303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본사업	3,035백만원	계약('21.11.)
감리용역	194백만원	계약('21.9.)
개인정보 영향평가	76백만원	계약('21.11.)
직접구매 S/W	998백만원	계약('21.7.)

○ 주요내용

- 국내 평가정보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국민의료 평가포털' 구축
- 평가포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우리 원이 수행 중인 다양한 평가제도의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한 표준 설정
- 평가사업별 상이한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공개 채널을 평가통합포털에서 통합제공
-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구현으로 '국가 통합평가 거버넌스' 실현